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이하 '경쟁제품'이라 함)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된 세부품목 중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(이하 '운영요령'이라 함) 제8조의2에 따라 '독과점 유의품목' 및 '집중도 관리품목'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8월 3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‘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’ 지정 내역

1. 개요

- (목적) 다수의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경쟁을 토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쟁제품의 공급집중도를 관리
 - (지정기준) '25~'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'운영요령'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제품(세부품목 단위)을 지정
 - 독과점 유의품목은 최근 2년(2024~2025년) 연속 또는 최근 5년간(2021~2025년) 3회 이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발생한 품목
 - 집중도 관리품목은 전년도(2025년) 또는 최근 4년간(2022~2025년) 2회 이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발생한 품목
- ※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(매출액 80억원 미만 제외)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1개 기업 50% 또는 3개 이하 기업 합계 75% 이상인 경우임
- (분석방법)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계를 활용하여 대상 품목 선별

- (지정효력) ‘운영요령’ 제9조에 따라 최근 5년간(추천연도 포함) 3회 이상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거나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8~2030년 경쟁제품 추천에서 제외
- 집중도 관리품목은 매년 공급집중도를 분석·관리하여 독과점 유의품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

2.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 내역

연 번	세부분류		특이사항	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	비고
	세부품명	세부품명번호			
1	입축사료펌프	4015157001	상수도용은 토출구경 1,200mm미만에 한함	○	
2	소각로	4710152901	1. 일일처리용량 70ton/일 이하에 한함 2. 가스냉각장치, 유해가스저감 장치 포함	○	

3.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

연 번	세부분류		특이사항	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	비고
	세부품명	세부품명번호			
1	대형냉장고	2413150301	-	○	
2	산업용충전장치	2611170401	송변전용 또는 통신용에 한함	○	
3	조명타워	3911200101	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	○	
4	일체형컴퓨터	4321159301	-	X	